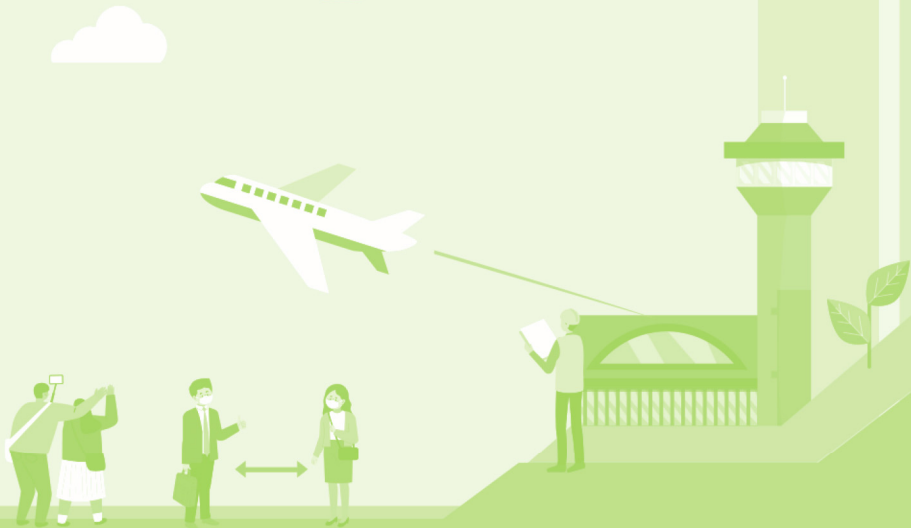


#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

2020. 04.





# 목차



## I.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

01.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	4
02.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	5
03. 주요 지원내용	9

## II.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

### 〈사업주 지원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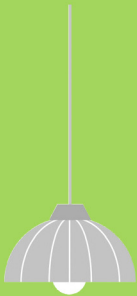
01. 고용유지지원금	14
02.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	18
03.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	19
04. 건강·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(보건복지부)	20
05.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	21
06.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	23
07. 고용촉진장려금	24

### 〈근로자 지원〉

08. 훈련연장급여 지원	28
09.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	29
10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	30
11. 취업성공패키지	33
12. 국민내일배움카드	34
13.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	36

# I.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

- 
01.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
  02.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
  03. 주요 지원내용



## 01.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

### 제도개요

- 경기의 변동,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,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

### 지원대상

-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(퇴직자 포함)

### 지원내용

-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

### 지원기간

-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,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



## 02.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기간

### 관광·공연업 등

- ✔ 지원기간 : '20. 3. 16. ~ 9. 15.
- ✔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가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,
  - 「관광진흥법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해운법」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공연법」 등 개별법에 따라 신고·등록한 업체

### 업종별 지원대상 확인방법

업종	분류 기준	
여 행 업	업종코드	• N752(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)
	개별법	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
관광숙박업	업종코드	• 55101(호텔업) • 55103(휴양콘도 운영업)
	개별법	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*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* 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, 휴양 콘도미니엄업
관광운송업	업종코드	• 49232(전세버스 운송업) • 50111(외항 여객 운송업) • 50121(내항 여객 운송업) • 50201(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) • 50202(항만 내 여객 운송업) • 51100(항공 여객 운송업)

업종	분류 기준	
	개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</li> <li>• 「해운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(같은 법 제3조제1호~6호)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</li> <li>•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업체</li> <li>• 「항공사업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</li> </ul>
공연업	업종코드	• R901(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)
	개별법	• 「공연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

### 항공기취급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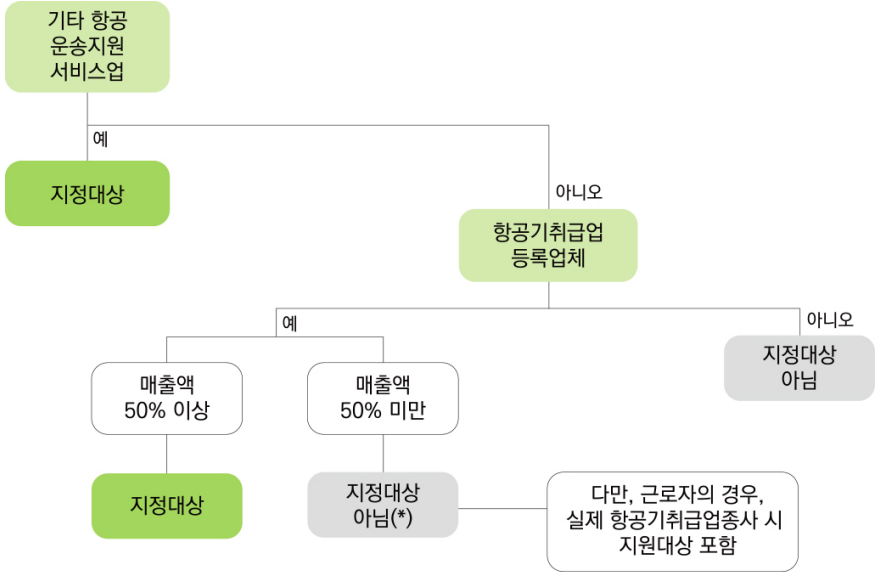
☑ 지원기간 : '20. 4. 27. ~ 9. 15.

☑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에 해당하거나 또는 개별법 등에서 정한 방법(면허, 등록, 소관부처 장관 확인 등)으로 확인된 업체

업종	분류 기준	
항공기취급업	업종코드	• 52939(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)
	개별법	• 「항공사업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

업종	분류 기준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43 297 716 338">지원대상 사업주</th> <th data-bbox="716 297 998 338">지원대상 근로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43 355 716 867">                    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 중 매출액 50% 이상이 항공기 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주                       * 다만, 고용유지지원금 중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 50% 미만인 업체에서 항공기 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        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716 355 998 867">                     ①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☞ 업체 소속 근로자·퇴직자 전체가 지원대상(종사업무 제한없음)                       ②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이 50%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☞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근로자·퇴직자만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data-bbox="443 826 998 867">                     (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(8쪽) 참조)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대상 사업주	지원대상 근로자	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 중 매출액 50% 이상이 항공기 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주  * 다만, 고용유지지원금 중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 50% 미만인 업체에서 항공기 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	①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  ☞ 업체 소속 근로자·퇴직자 전체가 지원대상(종사업무 제한없음)  ②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이 50% 미만인 경우  ☞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근로자·퇴직자만 지원대상	(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(8쪽) 참조)	
지원대상 사업주	지원대상 근로자							
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 중 매출액 50% 이상이 항공기 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주  * 다만, 고용유지지원금 중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 50% 미만인 업체에서 항공기 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	①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  ☞ 업체 소속 근로자·퇴직자 전체가 지원대상(종사업무 제한없음)  ②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이 50% 미만인 경우  ☞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근로자·퇴직자만 지원대상							
(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(8쪽) 참조)								
면세점	업종코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47130(면세점)</li> </ul>						
	개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관세법」 제174조,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</li> </ul>						
전사·국제회의업	업종코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75992(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)</li> </ul>						
	개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</li> <li>•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된 업체</li> </ul>						
공항버스	개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매출액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</li> </ul>						

### 〈참고〉 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



\*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매출액 50% 요건과 관계없이 항공기취급업에 종사할 경우 지원 가능





## 03. 주요 지원내용

구분		일반		특별고용지원 업종
고용유지 지 원 금 (유급휴업· 휴직)	지원수준	우선지원대상기업 2/3 대규모기업 1/2~2/3		우선지원대상기업 90% 대규모기업 2/3~3/4
	지원한도	1일 6.6만원		1일 7만원 (대규모기업 6.6만원)
고용유지 지 원 금 (무급휴직)	지원요건	-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(3개월) - 무급휴직 실시(90일)		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-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 휴업(1개월) - 무급휴직 실시(30일)
				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- 무급휴직 실시(30일)
	지원한도	1일 6.6만원과 평균임금의 50%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		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- 일반과 동일
				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- 월 50만원
직업훈련	사 업 주 훈련지원	지원 한도	납부보험료의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240%)	납부보험료의 130% (우선지원대상기업 300%)
		훈련비 지원 단가	우선지원대상기업 100% 1,000인 미만 60% 1,000인 이상 40%	우선지원대상기업 150% 1,000인 미만 100% 1,000인 이상 90%
	국민내일 배움카드	-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15~55%		-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- 훈련비 자부담율 0~20%
	훈련연장 급여요건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~제4호 요건 모두 충족		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 대상 선정 가능
	생 계 비 대부한도	1명당 1천만원		1명당 2천만원

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

구분		일반	특별고용지원 업종
고용·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		납부기한 연장 ×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납부기한 연장 ○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건강보험료 (보건복지부)		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×	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○
국민연금보험료 (보건복지부)		체납시 연체금 징수	체납시 연체금 미부과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		부과 (1명당 3만원)	면제
취업성공패키지II		중위소득 100% 이하 참여	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 요건 면제
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용자	소득요건 (*)	(임금감소·소액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(‘20년 월 181만원) (이외 생계비) 3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‘20년 월 259만원)	(임금감소·소액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의 70%(‘20년 월 222만원) (이외 생계비) 4인가구 중위소득 2/3 이하(‘20년 월 317만원)
	상환기간	최대 5년(거치 1년/상환 3~4년)	최대 8년(거치 1~3년/상환 3~5년)
	한도액	(임금체불생계비) 1천만원 (자녀학자금) 연 5백만원	(임금체불생계비) 2천만원 (자녀학자금) 연 7백만원
	대상자	(자녀학자금) 고등학생 자녀	(자녀학자금)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
고용촉진장려금		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	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
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	지원대상	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	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

\* 「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(‘20.2.28)」에 따라 한시적(‘20.3.9.~7.31.)으로 생활안정자금 용자 시 소득요건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(‘20년 월 388만원)로 완화(임금체불생계비 제외)

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 
업종 지원제도

## Ⅱ.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

—  
사업주 지원  
근로자 지원





## 사업주 지원

01. 고용유지지원금
02.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
03.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
04. 건강·국민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 (보건복지부)
05.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
06.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
07. 고용촉진장려금



# 01. 고용유지지원금

## 개요

- 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(이하 “지정업종”)의 지원대상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(휴업, 휴직)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

## 지원대상

- ✔ 지정업종의 지원대상 사업주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 동안 「고용보험법」 제21조에 따라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

## 지원내용

- 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

구분	지원요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용유지지원금 (유급휴업·휴직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(다음 지원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)</li> </u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</li> <li>② ①에도 불구하고, 긴급한 경영악화로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실시없이 무급휴직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가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</li> </ol>

\*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“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요건”에 해당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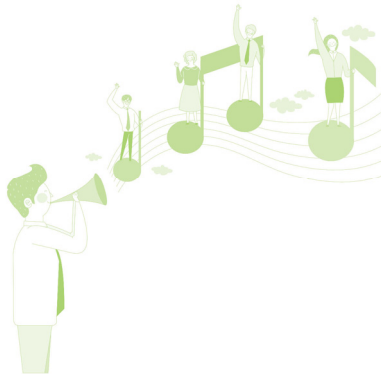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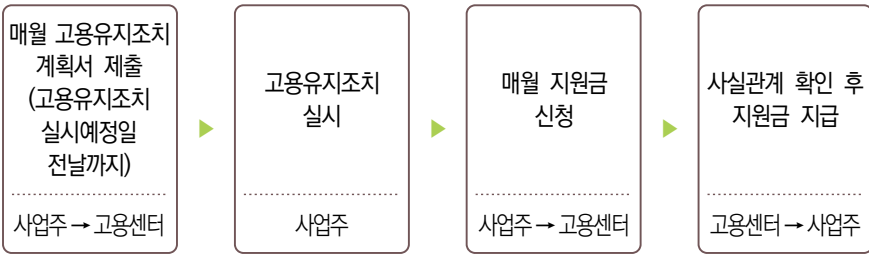
☑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

사업명	일반업종 지원 내용	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
유급휴업 (총근로시간의 20%를 초과하여 단축근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/3 (대규모기업 1/2~2/3) 지원</li> <li>* 1일 66,000원 한도(연 180일까지)</li> <li>** '20.2.1.~'20.3.31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3/4(대규모기업 2/3)</li> <li>*** '20.4.1.~'20.6.30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9/10(2/3)</li> <li>**** '20.7.1.~'20.7.31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3/4(2/3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/10 (대규모기업 2/3~3/4) 지원</li> <li>* 1일 7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,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.6만원 한도)</li> <li>** '20.3.16.~'20.9.15. : 여행업, 관광 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</li> <li>*** '20.4.27.~'20.9.15. : 기타 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, 면세점업,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, 공항버스</li> </ul>
유급휴직 (1개월 이상 휴직 부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/3 (대규모기업 1/2~2/3) 지원</li> <li>* 1일 66,000원 한도(연 180일까지)</li> <li>** '20.2.1.~'20.3.31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3/4(대규모기업 2/3)</li> <li>*** '20.4.1.~'20.6.30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9/10(2/3)</li> <li>**** '20.7.1.~'20.7.31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3/4(2/3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/10 (대규모기업 2/3~3/4) 지원</li> <li>* 1일 7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,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.6만원 한도)</li> <li>** '20.3.16.~'20.9.15. : 여행업, 관광 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</li> <li>*** '20.4.27.~'20.9.15. : 기타 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, 면세점업,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, 공항버스</li> </ul>
무급휴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 결정</li> <li>* 1일 66,000원 한도(최대 180일)</li> <li>**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인당 10만원 범위 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 결정</li> <li>* 1일 66,000원 한도(최대 180일)</li> <li>**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인당 10만원 범위 내</li> </ul>
무급휴직 (일반절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범위 내 결정</li> <li>* 1일 66,000원 한도(최대 180일)</li> <li>**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인당 10만원 범위 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범위 내 결정</li> <li>* 1일 66,000원 한도(최대 180일)</li> <li>**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인당 10만원 범위 내</li> </ul>

사업명	일반업종 지원 내용	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
무급휴직 (신속지원 프로그램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코로나 19 특별고용지원업종(조선업종 제외)</li> <li>- 피보험자 1인당 총 지원일수 180일 중 90일(3개월)간 최대 150만원(월 50만원)</li> <li>-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인당 10만원 범위 내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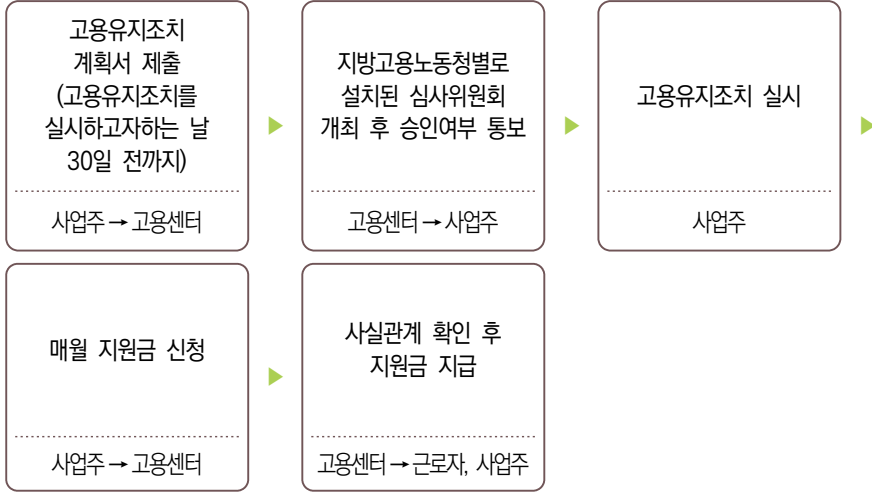
### 지원(신청) 절차

#### ✔ 유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





☑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



☑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(신속지원)



신청 및 연락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팀),  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## 02.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

### 개요

- ☑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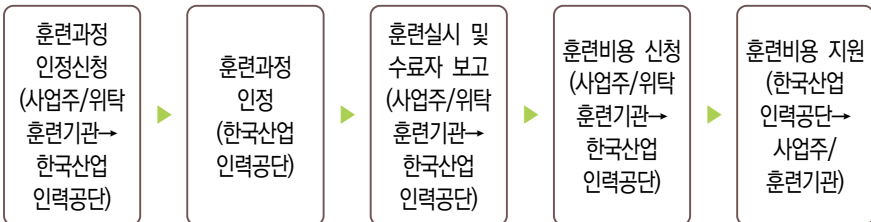
### 지원대상

- 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

### 지원내용

- \*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시 이후 시작하는 직업훈련과정부터 적용
- ☑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이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우대 지원
  - (우선지원 대상기업)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%
  - (1,000인 미만 기업)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%
  - (1,000인 이상 기업)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%

### 지원(신청) 절차



신청 및 연락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(1644-8100)

### 03.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

#### 개요
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

#### 지원대상

-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

#### 지원내용

-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\*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\*\*

\* 관광·공연업은 '20.3월분~'20.9월분에 대해, 항공기취급업 등은 '20.4월분~'20.9월분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(각 6개월씩 연장)

\*\*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

#### 지원(신청) 절차

-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



신청 및 연락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
## 04. 건강·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등(보건복지부)

### 개요

- 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사업장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체금 미부과(징수 예외) 및 체납처분 유예

### 지원대상

- 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

### 지원내용

- 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
  - \* 관광·공연업은 '20.3월분~'20.9월분 체납보험료, 항공기취급업 등은 '20.4월분~'20.9월분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미부과
- 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(국민연금보험료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 아님)
  -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지정일 이전 유효한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\*
  - \*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전의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뿐이며 체납처분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님

### 지원(신청) 절차

- 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연체료 미부과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



신청 및 연락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
## 05.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

### 개요

- 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

### 지원대상

- ☑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

### 지원내용

- 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등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
  -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동 부담금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
  - \*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미만 고용한 사업주는 미달장애인수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부  
 $(\text{월부담금}) = \text{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} \times \text{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}$

구 분		2019년도	2020년도
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장애인 비율	3/4 이상인 경우 미달고용인원(1명당)	1,048,000원	1,078,000원
	1/2 이상~3/4 미만인 경우 미달고용인원	1,110,880원	1,142,680원
	1/4 이상~1/2 미만인 경우 미달고용인원	1,257,600원	1,293,600원
	1/4 미만인 경우 미달고용인원	1,467,200원	1,509,200원
	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달의 미달고용인원	1,745,150원	1,795,310원

\* 신고기한까지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금(100분의 10)을,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(36개월간 1천분의 12)을 부과

### 지원(신청) 절차

- ☑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부담금 등 유예신청

신청 및 연락처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락처 및 소재지

기관명	전화	소재지
본부	031) 728-7001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(구미동)
서울지역본부	02) 6320-7000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11층 (충무로3가)
부산지역본부	051) 640-980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, 10층 (범천동)
대구지역본부	053) 288-1500	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, 13층 (대명동)
광주지역본부	062) 448-1199	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, 12층 (치평동)
대전지역본부	042) 620-6200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, 13층 (월평동)
경기지역본부	031) 300-0906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, 4층 (인계동)
서울남부지사	02) 6004-1005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, 6층 (영등포동 2가)
서울동부지사	02) 2146-3500	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, 11층 (신천동)
인천지사	032) 242-1004	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, 1층 (구산동)
울산지사	052) 226-1004	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, 10층 (달동)
경기북부지사	031) 850-4500	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, 3층 (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)
경기동부지사	031) 600-0209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, 2층 (구미동)
강원지사	033) 737-6620	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, 4층 (우산동)
충북지사	043) 230-6400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, 3층 (가경동)
충남지사	041) 629-6000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, 3층 (신부동)
전북지사	063) 240-2400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, 11층 (인후동2가)
전남지사	061) 240-0700	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, 7층 (호남동)
경북지사	054) 450-3000	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, 6층 (송정동)
경남지사	055) 225-8006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, 6층 (중앙동)
제주지사	064) 710-5010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, 6층 (이도이동)

## 06.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

### 개요 및 지원내용
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\*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 하였으나,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 지연신고 1명당 부과되는 과태료 3만원 면제

\* (대상 신고)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, (일용)근로내용 확인 신고, 이직확인서, 기존에 제출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사항 정정

- 다만,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 대상이며, 미제출이 적발되어 신고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

### 지원대상

-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\*

\* 기업의 사업주뿐만 아니라,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등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 포함

### 지원(신청) 절차

- 지원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등 지연신고 시 과태료 면제 처리(별도 과태료 면제 신청 절차는 없음)



신청 및 연락처 :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

## 07. 고용촉진장려금

### 개요

-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지원기간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\*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

\*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일 이후 이직한 자가 구직등록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기간 중 이수한 경우 이수일로부터 1년간 지원대상이 됨

### 지원대상

- 전국 모든 사업주(우선지원대상기업, 대규모 기업)

### 지원내용

-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1년의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

\* 지급대상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

구분	연간 지원금액	6개월 지급액
우선지원 대상기업	720만원	360만원
대규모 기업	360만원	180만원

### 지원(신청) 절차



신청 및 연락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팀),  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

■ 참고 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

연번	프로그램명	지원대상	주요내용
1	성취 프로그램	장기구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기실업 예방, (재)취업 촉진</li> <li>•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,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기술 향상</li> </ul>
2	행복오름프로그램	기초생활 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업의욕 강화,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</li> <li>• 구직기술 습득, 직장적응 등</li> </ul>
3	(WIND)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	결혼이민자 (여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업의욕 제고</li> <li>• 구직기술향상, 직장생활이해</li> </ul>
4	단기취업특강 (8종)	구직급여 수급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력서, 자기소개서, 면접 요령, 근로기준법, 취업정보 수집 등</li> </ul>
5	일자리희망 프로그램	취업취약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용센터에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명칭 및 방식으로 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</li> </ul>
6	단기집단상담 (10종)	구직급여 수급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행복한 대화 이끌기, 취업어려움 극복하기, 강점분석, 취업목표 정하기 등</li> </ul>
7	(Hi)고졸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	고졸(예정) 취업준비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업의욕 제고</li> <li>•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</li> </ul>
8	(청취력)청년취업 역량프로그램	청년구직자 (만19~34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 개발계획 수립</li> </ul>
9	(allA)청년니트진로 역량강화프로그램	취업취약 청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</li> </ul>
10	행복내일 취업지원프로그램	경제적 취약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기이해, 강점발견, 구직기술 습득, 직장적응 이해 등</li> </ul>
11	(CAP+)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	청년 (15~34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</li> <li>• 자기탐색, 기업탐색, 서류작성</li> <li>•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</li> </ul>
12	취업희망프로그램	심리적 취약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</li> <li>• 사회성(대인관계) 향상</li> </ul>
13	성장(성실) 프로그램	중장년층 (50세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업자신감 제고</li> <li>• 구직기술 향상</li> </ul>
14	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	경력단절 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취업분야 선정,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</li> </ul>
15	(V-TAP)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	제대(예정) 군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직준비 동기부여</li> <li>• 일자리 탐색, 전직계획 수립</li> </ul>
16	취업성공패키지	취업취약계층 청·장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취업상담·진단, 직업훈련, 취업알선</li> </ul>



## 근로자 지원

- 08. 훈련연장급여 지원
- 09.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- 10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
- 11. 취업성공패키지
- 12. 국민내일배움카드
- 13.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



## 08. 훈련연장급여 지원

### 개요

- 구직급여 수혜자가 고용복지+센터에서 지시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, 본인의 구직급여 수혜기간을 초과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날에 대해 훈련연장급여 지원

### 지원대상

-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혜자

### 지원요건

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

\* 다만, 6개월 이상의 훈련이나 2개 이상의 훈련을 연속하여 받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도 갖추어야 함

-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,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
-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했을 것

### 지원내용

- 구직급여 수혜기간을 초과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날에 대해 훈련연장급여 지원(최장 2년)

### 지원(신청) 절차

- 구직급여 수혜자가 직업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고용복지+센터 상담을 거쳐 훈련연장급여 신청



신청 및 연락처 : 고용센터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
(국번없이 1350)

## 09.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
### 개요

- ✓ 취약계층(비정규직 근로자, 전직실업자)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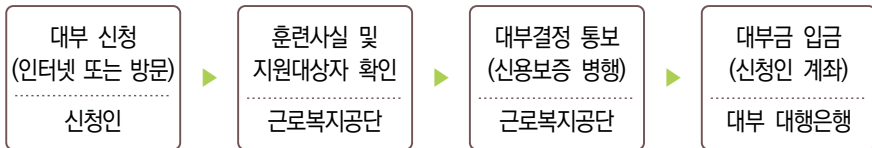
### 지원대상

- ✓ 「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」 제10조의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
  - \*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
  - ▶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연소득금액 8,000만원 이하

### 지원내용

- ✓ 월 단위 200만원, 1인당 총 1,000만원 한도의 대부 지원
  - ▶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2,000만원 한도
- ✓ 연리 1%(신용보증료 별도),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

### 지원(신청) 절차



신청 및 연락처 : 근로복지넷([www.workdream.net](http://www.workdream.net)),  
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

## 10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### 개요

- ☑ 특별고용지원 업종 저소득 노동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, 장례, 질병 등 생활필수 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

### 지원대상

- ☑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

### 지원내용

- ☑ 의료비, 자녀학자금, 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과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

### 융자 종류별 신청 요건

융자종류	내 용	지원대상 및 요건
① 의료비	본인/피부양자 실 의료비용	
② 혼례비	본인/자녀 결혼비용	• 3개월 이상 근속 중
③ 장례비	본인/부모 등 사망 경조비용	•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4인가구)의 2/3 ('20년 317만원') 이하
④ 부모 요양비	본인/부모 노인성 질환 요양비용	* 단, '20. 7. 31.까지는 388만원 이하
⑤ 자녀 학자금	고등/대학교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	•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
⑥ 임금 감소 생계비	사업주의 경영상 조치로 임금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* 단, '20. 7. 31.까지는 위기경보(경계~심각)기간 특정 월 소득이 위기경보(경계) 직전 3개월간 소득 대비 30% 이상 감소하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(388만원) 이하인 경우도 가능	•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 간 월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 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(4인가구)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% ('20년 222만원) 이하

용자종류	내 용	지원대상 및 요건
⑦ 소액 생계비	개인 및 기업 사정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개월 이상 근속 중</li> <li>• 개인사정,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</li> <li>• 용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(4인가구) 2/3의 70%('20년 222만원) 이하</li> <li>* 단, '20. 7. 31.까지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(월 388만원) 이하인 경우도 가능</li> </ul>
⑧ 임금 체불 생계비	임금체불로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일 현재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</li> <li>•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체불</li> <li>• 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중위소득(4인가구) 이하 ('20년 5,700만원)</li> <li>- 건설일용근로자 소득요건 비적용</li> </ul>

\* 일용근로자 요건은 별도

### 용자한도 및 상환

☑ (용자한도) 2종류 이상 용자 시 1인당 용자 총 한도 2,000만원

흔레비	의료비 장레비	부모요양비	자녀학자금	소액 생계비	임금감소 생계비	임금체불 생계비
1,250만원	1,000만원	1,000만원 (조)부모 1인당 연 500)	1,000만원 (1자녀 당 연 700)	200만원	1,000만원 (감소임금 내)	2,000만원 (재직자에 한함, 퇴직자 1천만원)

☑ (금리 및 상환) 연 1.5%, 1년 거치 3년 / 1년 거치 4년 / 2년 거치 4년 /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(다만,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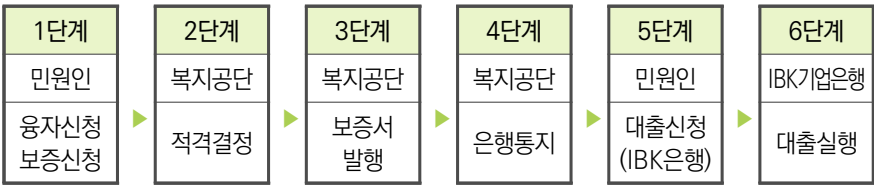
☑ (신용보증) 용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지원

\* 신용보증료 연 1%(임금체불생계비 1%) 별도 부담

### 적용시기

- ☑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한도 확대 등은 지정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용자 신청한 경우 부터 적용

### 지원(신청) 절차



신청 및 연락처 : 근로복지넷([www.workdream.net](http://www.workdream.net)),  
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



## 11. 취업성공패키지

### 개요

- ✓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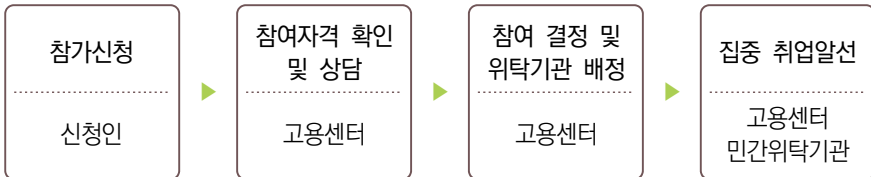
### 지원대상

- ✓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다 지원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직 후 현재 실업상태인 자

### 지원내용

- ✓ ‘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실직근로자’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II의 소득요건 미적용 ▶ 프로그램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### 지원(신청) 절차



신청 및 연락처 : 고용센터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
(국번없이 1350)

## 12. 국민내일배움카드

### 개요

- ✔ 취·창업을 위해 기술·기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(재)취·창업 촉진 및 생활안정 도모

### 지원대상

- 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실업자

### 지원내용

- ✔ (지원 한도)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 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
  - \* 1인당 지원 한도 300만원을 소진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제출
- ✔ (지원액)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7조 [별표5]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을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적용



직종 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

구 분	직종평균 취업률('16~'18년 종료과정)				
	70% 이상	60% 이상 70% 미만	50% 이상 60% 미만	40% 이상 50% 미만	40% 미만
근로장려금 수급자	92.5%	87.5%	82.5%	77.5%	72.5%
일반훈련생	85%	75%	65%	55%	45%
취성패 II 유형			70%	60%	50%
취성패 I 유형	100%				80%

참고사항

- ☑ 훈련과정 ▶ 직업훈련포털(HRD.Net) 검색

지원(신청) 절차

- ☑ (신청방법)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www.hrd.go.kr) 신청 가능
- ☑ (신청절차) 카드발급 신청 ▶ 카드 발급(지원대상에 따라 1~2주 이내)



신청 및 연락처 : 고용센터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
(국번없이 1350)

## 13.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

### 개요

-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\* 국가는 체불근로자의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일반체당금 신청을 대리할 공인노무사를 지정해 주고, 추후 지정된 공인노무사에게 조력지원 비용을 지급

### 지원대상

-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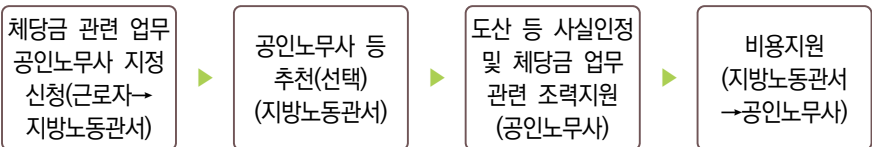
### 지원내용

- 일반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나,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시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(그 외 요건은 동일)

### 적용시기

-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내에 '체당금 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 신청서'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경우 지원

### 지원(신청) 절차



신청 및 연락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,  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